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7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이재강 · 이병진 · 김기표
이기현 · 염태영 · 이상식
조정식 · 박희승 · 조계원
서영교 · 채현일 · 박지원
장종태 · 박해철 · 손명수
박용갑 · 박지혜 · 김동아
양문석 · 정성호 · 김병주
윤후덕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매입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그 용도도 하천 · 도로 · 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 도모

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u>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